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22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1.

발 의 자 : 박완수 · 배덕광 · 조원진

박맹우 · 김성찬 · 주광덕

김정훈 · 조경태 · 주호영

정갑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,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.

특히,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, 역사 · 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.

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‘당해’를 우리식 한자어인 ‘해당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17조 단서).

법률 제 호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